

##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: 보건관리자

채용분야	보건 관리자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세분류
		23. 환경·에너지·안전	06. 산업안전	02. 산업보건관리	01. 산업보건관리 02. 근로자작업 환경 관리
NCS기반 채용전형 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차)서류심사 → (2차)면접심사 → (3차)면접심사 합격자 증빙서류 검증 → (4차)신체 검사서(공무원 채용기준) 합격여부 확인 → (5차)결격사유 조회 → (6차)최종합격</li> </ul>				
응시요건	연령	임용 예정일 기준 만 60세 초과 / 만 18세 미만자 지원불가			
	성별	무관			
	학력	무관			
	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(보건관리자의 자격)에 준한 자(필수)</li> <li>보건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(필수)</li> <li>간호사 자격증 소지(필수)</li> </ul>			
능력단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(산업보건관리)</b> 01. 보건관리계획수립평가, 02. 산업보건관리체제확립, 03. 산업재해관리, 04. 산업보건정보소통·관리, 05. 산업보건 위험성평가, 06. 작업환경관리, 07. 작업관리, 08. 건강관리, 09. 응급조치, 10. 사업장 건강증진, 11. 사업장 산업보건교육, 12. 보건 활동 모니터링, 13. 보건 관련 문서관리</li> <li><b>(근로자작업환경관리)</b> 01. 유해요인 조사, 02. 작업환경측정, 06. 산업환기평가설계, 07. 유해요인 관리, 08.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</li> </ul>				
직무수행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(산업보건관리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건관리계획 및 보건교육계획 수립·실시</li> <li>산업보건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</li> <li>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건강증진활동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업무</li> <li>건강관리실 운영 등 의료행위</li> <li>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업무</li> <li>직무스트레스, 근골격계 질환 등 관리</li> </ul> </li> <li><b>(근로자작업환경관리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장 유해인자 파악</li> <li>작업환경측정 시행 및 결과 평가</li> <li>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</li> </ul> </li> <li><b>(기타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산업재해 통계의 유지·관리를 위한 지도·조언(보건분야)</li> <li>보건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</li> </ul> </li> </ul>		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관련부처 요청에 따른 보건관련 자료작성 및 대응</li> </ul>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간호 및 산업보건관리 관련 전문지식</li> <li>·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, 권한에 관한 지식</li> <li>· 근로자의 보건교육에 관한 법령 지식</li> <li>·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</li> <li>·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등의 유해·위험요인 정보에 관한 지식</li> <li>·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에 관한 지식</li> <li>· 직업관련성 질환 사례, 통계에 관한 지식</li> <li>·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관련 지식</li> <li>·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지식</li> <li>·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·유지에 관한 지식</li> </ul>
필요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강검진, 작업환경측정 등의 관련 자료 분석 능력</li> <li>· 현장조사 기술</li> <li>· 계획서 작성 기술 및 문서화 능력</li> <li>· 문제점 및 현황분석 기술</li> <li>· 산업보건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술</li> <li>· 응급처치 기술</li> <li>· 구급장비 운영 및 관리 기술</li> <li>· 의약품 관리 기술</li> <li>· 보건정보 공유·의사소통 능력</li> <li>· 유해·위험요인 판별 및 분석 능력</li> <li>· 업무관련 재해 판별 및 분석 기술</li> <li>· 상담 기술</li> </ul>
직무수행 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보건관리의 사명감 및 책임감 있는 태도</li> <li>· 법령 및 업무규정 준수</li> <li>·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 태도</li> <li>· 현장조사 시 주의 깊은 관찰 태도</li> <li>·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건정보를 제공하려는 태도</li> <li>· 산업보건활동 수행의 적극적인 태도</li> <li>· 산업보건활동 계획 수립에 대한 논리적 태도</li> <li>· 긴급하게 위협을 주는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성을 갖는 태도</li> <li>·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</li> </ul>
자격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(보건관리자의 자격)에 준한 자(필수)</li> <li>▪ 보건관리자 경력 3년 이상(필수)</li> <li>▪ 간호사 자격증 소지(필수)</li> <li>※ 필수 자격요건, 경력요구 연수에 부합하지 않을 시 응시불가</li> </ul>
직업기초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조직이해능력</li> </ul>
참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NCS 분류체계 및 직무 내용관련 세부사항은 <a href="http://www.ncs.go.kr">http://www.ncs.go.kr</a>(NCS 사이트) 참조</li> <li>▪ 위 직무 설명서는 현재 NCS를 기준으로 당사의 채용직무와 관련된 대표적 NCS를 선정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NCS 개발 및 보완 동향과 당사의 주요사업 변경 등 내·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
## ◎ [직무설명자료 상세붙임] 보건관리자의 수행업무 및 자격

###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시행 2018. 12. 13] [대통령령 제29360호, 2018. 12. 11, 타법개정]

고용노동부(산업보건과-교육, 건강검진, 석면) 044-202-7746, 7739, 7738  
고용노동부(화학사고예방과-MSDS, PSM) 044-202-7758, 7754  
고용노동부(산업안전과-안전관리자, 인증) 044-202-7729, 7733  
고용노동부(산재예방정책과) 044-202-7690

**제17조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**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1. 26., 2014. 3. 12.>

1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
2.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·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(保護具)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3.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4.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5.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직의 직무(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)
6.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7.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(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 - 가.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
  - 나.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
  - 다. 부상·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
  - 라.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
 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
8.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9. 사업장 순회점검·지도 및 조치의 건의
10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·지도
11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12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13.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·유지
14.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

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1. 26., 2014. 3. 12.>

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·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7. 12., 2012. 1. 26.>

[전문개정 2009. 7. 30.]

[제목개정 2014. 3. 12.]

**제18조(보건관리자의 자격)**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.

[전문개정 2009. 7. 30.]

**보건관리자의 자격** (제18조 관련)